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방재성능 평가를 수행하도록 포함하고,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추가(안 제13조제1항)

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법 제16조의5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

나. 방재전문인력 인증 명칭 변경(안 제58조, 안 별표 3, 안 별표 3의 3)

방재전문인력 인증제에서 자격증제로 변경하고, 방재전문인력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로 변경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완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

제58조제3항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”을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”을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나목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”을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을”로 한다.

별표 3의3 1)의 시기란 1) 중 “인증서(이하 “인증서”라 한다)를”을 “자격증(이하 “자격증”이라 한다)을”로, “인증서를”을 “자격증을”로 하고, 같은 란 2) 중 “인증서를”을 “자격증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9호의 규

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3항, 제6항, 별표 3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급하는 자격증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의16제1항제3호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”을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을”로 한다.

②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중 “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”을 “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을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)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(이하 “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8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④ (생략)	제13조(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8조(방재전문교육과정) ① · ② (생략)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<u>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</u> 발급할 수 있다. ④ · ⑤ (생략)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, 위탁 및 <u>방재전문인력 인증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	제58조(방재전문교육과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을</u> -----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<u>방재대책관리사 자격</u> ----- -----

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172